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4

2016-4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조례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등 3건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특문화장적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5건
-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채택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지방회계법 등 5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서울특별시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5)
- ▶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8)
-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10)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15)
- ▶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18)
-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 지원에 관한 조례 (22)
- ▶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26)
- ▶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29)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32)
- ▶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36)
- ▶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38)
- ▶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42)
- ▶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44)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48)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채택 (58)
- ▶ 울산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60)
- ▶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와 MOU 체결 (62)
- ▶ 경남도의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64)

최근 제 · 개정 법령

- ▶ 지방회계법 (66)
- ▶ 자원순환기본법 (68)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71)
- ▶ 평생교육법 (72)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서울특별시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 운영 조례안 (76)
- ▶ 경기도 오산시 출자 · 출연기관 운영 관련 (83)
- ▶ 전라남도 영암군 번영회 보조금 지원 조례안 (88)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1.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8.] [충청남도조례 제4137호, 2016.6.8., 제정]

□ 주요목적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 주요내용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



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사·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심사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심사 : 30만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6.6.8.] [충청남도조례 제4129호, 2016.6.8., 제정]

□ 주요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지원의 세부내용)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 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10.] [충청남도조례 제4141호, 2016.6.1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3. “공공기관”이란 도 소속 및 산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나.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다.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 까지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추진체계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



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따른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해당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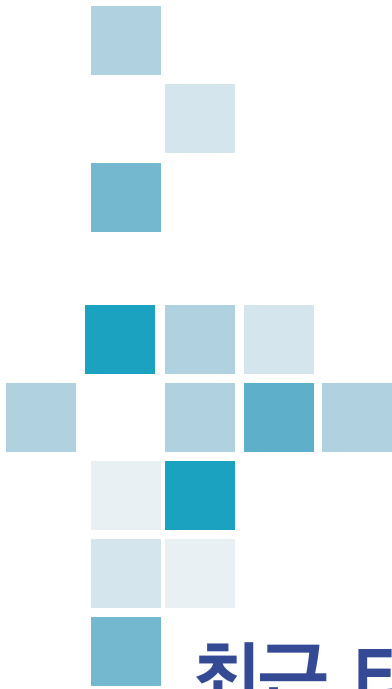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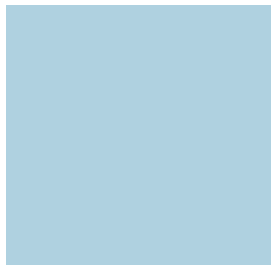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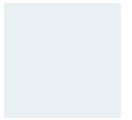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5.19.] [인천광역시조례 제5654호, 2016.5.19., 제정]

□ 주요목적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틈문화창작지대에 설치된 시설 및 그에 부속된 각종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콘텐츠 창작 및 시연, 개발, 세미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조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제4조(주요기능)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창직 지원
2.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등 시범사업에 제공
3.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사

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 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문화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특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특문화창작지대의 관리·운영을 문화산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문화창작지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시행 2016.5.20.] [강원도조례 제4024호, 2016.5.20., 제정]

□ 주요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지역”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 지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영,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 강원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9.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강원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중요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사업
 4. 전기자동차 시범지역 지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주택·교통업무 담당국장, 환경업무 담당국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4. 전기자동차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3.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6.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도내 전기자동차 시범지역 운영 8.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전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3.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9.] [전라북도조례 제4268호, 2016.5.9., 제정]

□ 주요목적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 시군 및 도민의 책무) ① 시·군은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이를 총괄·관리하면서 도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도, 시·군이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2장 사업장 악취방지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5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타율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해결이 아닌 기업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단 내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사업비는 별표 3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

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면서 시군·기업·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사업장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개별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한 악취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장 가축분뇨 악취방지

제11조(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 기타지역의 일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2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1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사업비는 별표 3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를 양돈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보급에 노력하며, 이를 위한 보급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축사 청결유지 지원)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시행 2016.5.26.] [경상북도조례 제3781호, 2016.5.26., 제정]

□ 주요목적

경상북도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농업명장” (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채소·화훼분야
3. 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 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 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도지사는 시·군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명장의 시상) 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전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
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경기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시행 2016.5.17.] [경기도조례 제5238호, 2016.5.17.,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응사항 안내 및 보호기관에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5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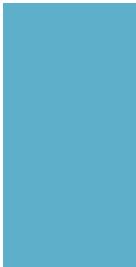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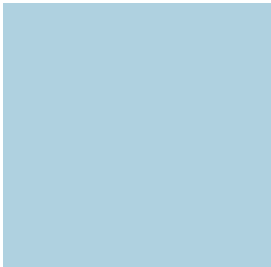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1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160호, 2016.5.19., 제정]

□ 주요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채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채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

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기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평가한다.

제1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 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5.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284호, 2016.5.9., 제정]

□ 주요목적

「동물보호법」에 따라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부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고한 영업을 말한다.
2. “동물장묘시설”이란 부령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부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3.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부령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령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8.12.]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504호, 2016.5.9., 제정]

□ 주요목적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전본주택”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전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운영) 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자

④ 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등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관한 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4.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골조 시공시 또는 완료시와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수단의 검수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같이 실시하는 것이 사업주체 및 건축주 등에 불편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동시에 각각의 검수와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검수활동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하고, 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단 구성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할 수 있다.

② 검수단·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고, 회의는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개발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 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 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단의 자료 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검수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586호, 2016.5.30., 제정]

□ 주요목적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 재원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군과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받은 자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산물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
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농업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1% 이하인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배제한다.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 등록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5.3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058호, 2016.5.31., 제정]

□ 주요목적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정리·분류·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설치장소)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회원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책임 및 변상)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제10조(대여기준) 회원 1명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수량과 대여기간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 ② 회원이 이사·입원·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

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4.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등의 물품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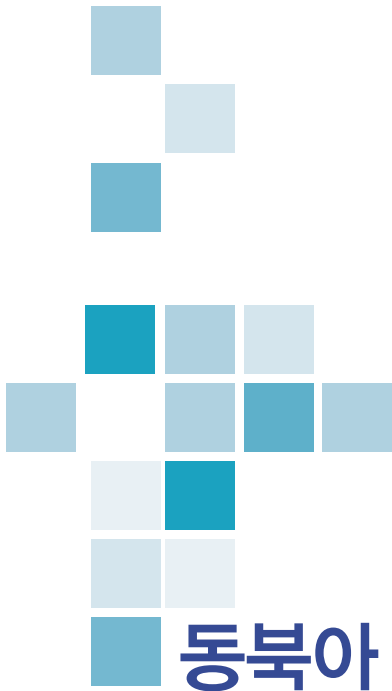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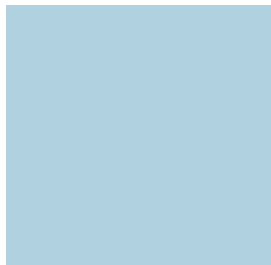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2016년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NALACF) 개최

개 요

- 주 제 : 동북아시아 지역간 문화관광 교류 협력 방안
 - ※ 부제 1) 문화관광으로 하나 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도약
 - 2) 문화관광의 중심 동북아시아, 세계 관광의 중심이 되다!
- 개최기간 : 2016.4.18.(월)~4.20.(수) / 2박 3일
- 장 소 : 덕산 리솜스파캐슬 및 도내 일원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참 석 : 동북아 5개국 / 11개 지방의회(140여명)
 - 한국(충청남도, 강원도), 중국(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일본(아키타현, 나라현, 니가타시), 러시아(연해주), 몽골(투브 아이막)
- 주요내용 : 주제와 관련한 기조연설 및 발표, 문화관광 교류협력 의제 논의
 - ※ 부대행사 : 민간(관광협회) 교류회, 공예품전시회, 백제역사문화 홍보





종합평가

□ 2016 제7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은

- 동북아 역내 협력과 발전을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2016년엔 충남에서 주최하여 총 11개 지방 의회에서 140여명의 지방의원 및 관련공무원이 참여한 국제행사
-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며, 행사를 통해 우리도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격을 높인 행사로 자리매김 가능

□ 이번 포럼의 성과를 보면

- 특히,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만남 이상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 포럼은 문화와 관광에서 실질적인 성과거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 교류협력의 제안을 이끌어낸 것이 이번 포럼의 두드러진 성과임
 - 각 지방의회에서 약 30여개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이 제시되었고
 - 우리도 의회가 제정한 엠블럼을 향후 동북아 지방의장 포럼의 상징물로 확정하였으며
 - 11개 의회 의장 모두가 동의하는 「문화·관광 교류협력을 위한 충남의정서 (Chungnam Protocol for Culture and Tourism Exchange &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를 채택한 일이 될 것임
- ⇒ 전체적으로 이념적으로 대치되고 경제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제관계를 고려,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프트한 문화·관광을 테마로 접근하여 참가 지방의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6 NALACF 충남 개최의 세부 성과

교류·협력 차원의 성과

- 외래 관광객 비율미약(2%), 동북아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필요
 -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확대를 통한「충남관광」인식 재 확산
- 2020년 동북아시아 관광객 수요 67% 점유 전망, 시장의 중요성 증대
 - 문화관광 특성상 상호의존적 관계유지 및 지방정부간 접근 중요
- 백제시대 문화교류(전파)의 원류(아스카 등)로써 선도적 위상활용
 - 충남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견인

② 전략적 안목으로 볼 때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들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핵심적인 문화관광 상품화 계기 마련
 - 백제역사 문화유적,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등 문화자원 활용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위한 SOC개발, 동북아지역 간 접근성 제고
 - 서산 민항 유치, 대산항 국제선 취항 등 관광수요 대응 인프라 구축
- 중국경제 부상 등 국제적 관광트랜드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간 연대
 - 적극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활동 모색
- 문화와 관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공통의 정체성 창출 마련
 - 동북아 문화관광의 신 시장 개척을 위한 5개국 지방단체간 협력 강화
 - 동북아 지방정부간 문화관광 마케팅 활동 상호협력 등



③ 행사의 진행과 의전

- 깊이 있고 각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대안을 제시한 기초연설, 깔끔한 안내책자와 자료집, 발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적절한 번역과 통역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원활하고 내용이 충실
- 5개국 모두에게 적합한 오·만찬 메뉴, 개별 안내시의 맞춤형 메뉴, 안내의원 및 안내공무원의 친절함과 정중한 자세로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옴
- 무난하고 온기 있는 행사진행, 행사구간별 정확하게 지켜진 일정, 사회자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행사진행, 행사진행 요원의 빈틈없는 일처리 등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기분을 흐뭇하게 함
-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행사로 모든 행사 운영을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도의회 전 직원이 각자의 역량을 모으고 합심하여 포럼 행사의 시작인 영접에서 부터 마지막인 환송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함

④ 기대박 성과

- 국제포럼은 준비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런 행사로 인식하여 차기(2017년) 개최를 기피하던 각 지방의회에서 우리도 의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보고 서로 개최하겠다고 자원
 - ※ 아키타현, 연해주, 헤이룽장성 등
 - 우리도 의회의 행사 기획과 내용, 의전 등 모든 면에서 잘 이루어졌다는 반증
 - ⇒ 우리도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⑤ 차별화된 이벤트

○ 개회식 퍼포먼스

- 무대 위의 백드롭을 11개 참가 지방의회를 지도에 표기하고 LED등을 설치한 후 가림막으로 차단하였다가 참가의회 대표와 귀빈들이 개회 선언과 동시에 버튼을 눌러 가림막이 걷히고 불을 밝히는 깜짝이벤트 연출
- ⇒ 각자 지자체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서로간의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로 즐거운 마음으로 퍼포먼스에 동참



○ 엠블럼 제정

-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서로간의 결속을 다지고 성과를 거양해 나가자고 한다면 협의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필요



- ⇒ 우리도 의회에서 상징물을 처음으로 제작, 참가 지방의회와의 흔쾌한 동의를 통하여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은 동 지방의회 결속력과 우리도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 기념품 전달

- 기념품은 참가 지방의회 의장의 명패를 목각하여 금동대향로 복각품과 함께 전달

⇒ 지방의회 의장의 권위와 위상을 세워주고 가보로 전승하게 함으로써 충남을 홍보하고 우호적인 마음을 갖도록 함



시 사 점

○ 관광부문의 주요 국제기구인 세계관광기구(UNWTO), OECD 관광위원회, APEC 관광장관회의 등의 국제관광의 장애요인 제거, 여행객 안전 및 위기관리, 공동 마케팅, 국가간 관광관련 정보공유, 관광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 글로벌 관광현안에 대해 협의와 협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 동북아시아 한·중·일·러·몽 지방의회간 문화관광을 주제로 사례와 정책, 문화관광 협력을 위한 제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였음
- 한·중·일·러·몽 문화 관광 실태와 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 결론적으로 동북아 각 나라별 문화관광 발전전략은 그 나라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와 기후조건 및 풍부한 관광자원 등의 강점을 잘 살려서 정책적으로 나름 잘 추진되고 있지만
 -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불가피한 여건으로 역내국가간의 교류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각 지방의회에서 제안한 문화관광 통합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이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역 문화관광 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광분야 총괄책임자의 지속적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겠고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동북아 지방간 연락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적 조직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실천적이며 효과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행사 이모저모

□ 포럼



개 회



행사장 전경



합의문 서명



차기개최지 선포

□ 민간(관광협회) 교류회



민간교류회



해미읍성 견학

□ 공예품전시회



개막식



전시 관람

□ 충남 홍보



세계문화유산 홍보



관광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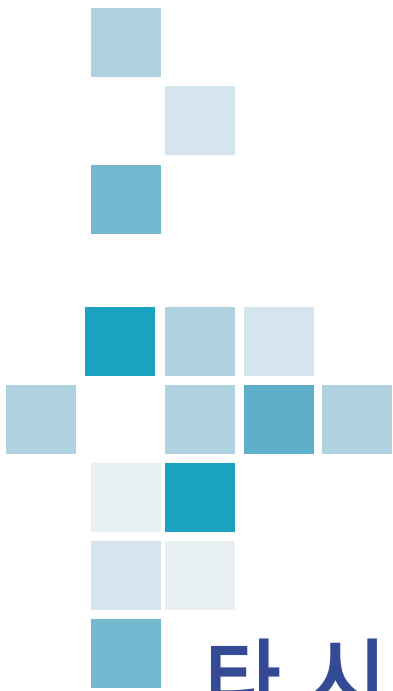
□ 현장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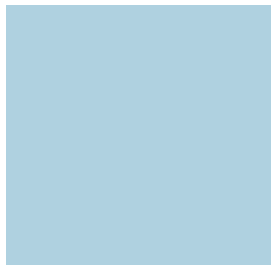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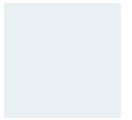
수덕사



백제문화단지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채택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는 5월 19일 지난 2016년 3월과 4월 중 의정모니터 제안서 3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과 담당지도 교사 증원 그리고 장애특수학교 건립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장애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시설 부족현상」 의견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 제안은 “장애학생에게 보dana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교육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심사위원장인 서명현 입법정책담당관은 선정이유를 밝혔다.

그 외 우수제안에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일선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천교육청의 감사행정 개선」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다.

의정모니터 제안 심사 및 우수제안 선정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그밖에 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11회에 걸친 심사로 3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의회에서 격월로 발간되는 의회저널에 게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요원은 총 5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불편사항 등 247건을 제안한바 있다. 의정모니터는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한시민 불편사항제보는 물론 자치입법의 제·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제2기 의정모니터 활동이 2016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의정모니터를 2016년 6월 모집·선정하여 2016년 7월부터 2년간 제3기 의정모니터가 활동하게 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과 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신성장동력연구회’ (회장 박학천 의원)는 5월 31일 오후 2시 시의회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관련기관 및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연구회’는 동북아오일허브 및 신재생,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 울산의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제안을 위해 박학천 의원을 회장으로, 임현철 의원, 배영규 의원, 김일현 의원, 윤시철 의원, 김종무 의원, 송병길 의원이 뜻을 모아 활동 중이다.

박학천 의원은 “지금의 위기는 도시 재창조를 위한 내일의 기회”라며 “우리 연구단체는 울산이 보유한 역사·문화 등 천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된 관광산업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물론, 울산시와 대학 및 연구단체, NGO 및 시민 모두의 협력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매력 있는 관광도시 울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내년은 울산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울산시는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정하고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관광홍보대사가 되어 관광도시 울산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는 임현철 의원의 사회로 내빈소개, 개회 등에 이어 유니스트 임진혁 교수가 ‘울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진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태화강대공원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반구대 지역 전체를 활용한 선사문화 관광 △울산의 다양한 성들과 역사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체성 제고와 관광효과를 겸용할 수 있고, 해외관광객에도 어필할 수 있으며, 개인 및 영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차별성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삼건 울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병길 시의원, 울산대학교 이규백 교수,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연구위원, (주)연두의 여행이야기 신수애 대표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지정토론자로 나선 송병길 의원은 시대마다 노는 법이 따로 있다면서 우리 울산이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굴뚝 없는 산업이 지역경제의 동력이 되려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울산만의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며, 그동안 울산이 공들인 산업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등을 킬러콘텐츠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와 MOU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5.19.(목) 오후3시 경기도의회에서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안산7),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하남1), 원옥희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새누리당, 여주1)과 이강숙 고향주부모임 회장, 경기농협 계열사 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 앞서 30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구성된 안산시지구촌합창단이 공연을 펼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농협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문화가족의 모국 방문과 결혼 지원 사업과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문화 합창, 국악, 다문화 UCC 등 다문화 소통프로그램운영 사업,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학습교육, 가정방문교사 파견, 가족캠프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소통·화합을 위한 체육활동지원 사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호사, 가베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교육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경기도에서 ‘「같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농협’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도의회’가 함께하면 다문화가족의 행복도 배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경기도에 ‘답’이 있다.”고 하였다. 또 “본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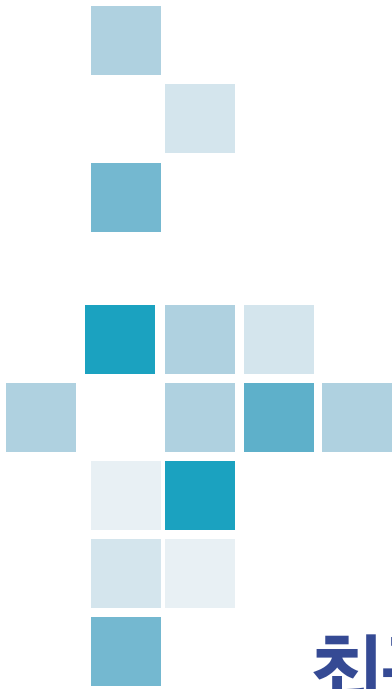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양해영(새누리·진주1) 의원은 5월 19일 10시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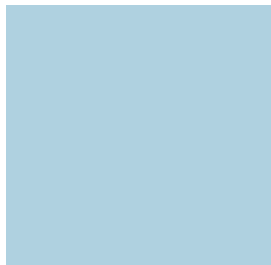
이번 토론회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직거래 장터관련단체와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양해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의원 발의로 현재 입법지원 부서에서 16건의 조례안이 검토중에 있거나 검토가 이미 완료되었고, 지난 2. 17일 여영국의원의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양해영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4229호, 2016.5.29., 제정]

□ 제정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제11조 및 제1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제14조 및 제16조)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의 자원순환 여건과 각국의 자

원순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중장기 · 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 관리하며, 해당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순환이용사업자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그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이용사업자에게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과 제품 등의 내구성(耐久性)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가 저조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평가 결과 공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및 제34조)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에 대하여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그 품질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 또는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또

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제21조)

환경부장관은 최종처분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되,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제26조 및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 제정이유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 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함(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9조).

라.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20조).

4. 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독교육에 머물러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부정하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사가 명의·자격증을 대여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자격취소 규정이 미비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제9조제2항).

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다. 국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



교육과정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함(제20조의2, 제21조의2 신설).

마.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3항)

바. 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정취득자, 명의·자격증 대여자, 결격사유 발생자에 대한 자격취소와 청문(제24조의2 신설, 제43조)

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제26조제3항).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5호, 2016.5.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행법에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즉,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공식창구를 마련하며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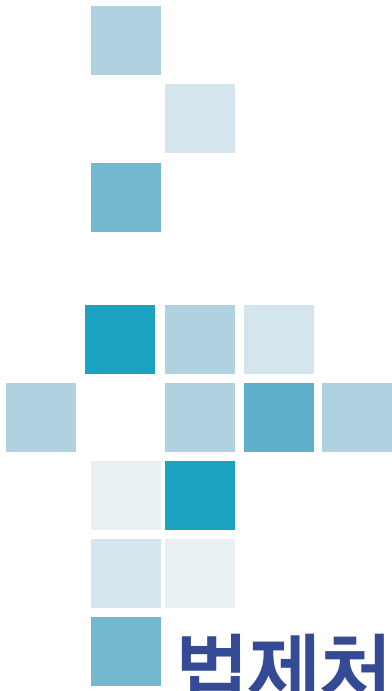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조치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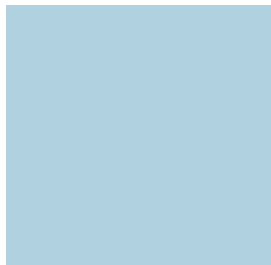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5조제6항).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0항).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제안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료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의견16-0090 회신일자 2016. 4. 20.

【질의요지】

가. 서울특별시장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서울특별시장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행정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여야 할 것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1호), 조산원(제2호) 및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 조례안”이라 함)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울시 조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에서는 시장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2016년 이후에 개설된 시립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마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바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된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교육감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제1항),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직접 사무를 특정하여 의원의 조례제안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법제처 2014. 11. 13. 회신, 의견 14-0200 참고), 서울특별시장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행정기구규정”이라 함) 제5조, 제36조제2항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례). 따라서,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정기구”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정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행정기구”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 행정기구,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인 본청,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지방행정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의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지방행정기구규정 제2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지방행정기구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행정기구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면서,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정한 기관이 행정기구인지 여부 역시 조례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행정기구로 설치

· 운영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을 행정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여야 할 것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제1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제3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조례안 제4조의2제3항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은 월 1회 이상 취약계층 대상의 방문진료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



1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조례안 제4조의 2제3항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은 월 1회 이상 취약계층 대상의 방문진료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안 제4조의2제3항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공익상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여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서울특별시장의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번호 의견16-0100 회신일자 2016. 4. 27.

【질의요지】

가.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오산시장의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오산시 조례안에서 시장이 재단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설립 형태를 살펴보면, 애향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오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5조제3항과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하 “오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오산시장과 협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바, 조례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오산시 조례안에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변경 시 사전에 오산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변경과 관련한 상위법령 규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및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산시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의회 승인을 정관변경의 필수적 절차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는 주무관청에 대해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오산시 조례안에서와 같이 애향장학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시장과 협의 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애향장학재단에 대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오산시 조례안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과 공익법인법 등에 따른 법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280 의견 취지 참조).

결론적으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예산 성립 및 변경 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자 하는 바, 오산시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효율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5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결산서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전형적인 자치사무로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운용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사전 자료 제출이 지방의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산시 조례안에서 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고 지방의회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한 이후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지방출자출연법 및 공익법인법에서도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보고나 제출 등의 절차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오산시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이 시장이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상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결론적으로, 오산시 조례안에서 시장이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의견16-0068회신일자2016. 4. 5.

【질의요지】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원 대상인 번영회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업의 내용, 영암군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암군조례안”이라 함)은 영암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영암군수는 번영회에 대하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사업과 기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3조), 번영회가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고(제4조), 번영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제5조), 이 사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한 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번영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번영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번영회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영암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사무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고, 번영회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2. 4. 회신, 의견 15-0312 참고).

다음으로, 번영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

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번영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인데, 번영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볼 수 있을 만한 개별 법률의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번영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지원 대상인 번영회의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업의 내용, 영암군의 재정 상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8. 19. 회신, 의견 13-0248 회신례 취지 참고).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6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